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우광명(Kwang-Myung Woo)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강사(제1저자)

조현숙(Hyun-Sook Cho)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론	V. 결 론
II. 전자대리인의 의의와 법적 지위	참고문헌
III. 전자대리인 관련 법규	Abstract
IV.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초록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장치·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전자대리인, 지능형에이전트, 전자계약

I. 서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거래수단을 등장하게 한다. 더불어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수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¹⁾으로서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을 대리해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미리 상호협정(interchange agreements)을 체결하는 EDI보다 훨씬 진보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은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인에게 물품을 팔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의 발달은 소프트웨어 대리인이 대리인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작동하거나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대리인의 역할은 더욱 다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과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전자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역할에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그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를 이르는 용어도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s), 자동화된 에이전트(autonomous agents), 또는 봇(bot)²⁾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이 전자대리인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기술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가 없고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전자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전통적인 계약법 하에서 계약 성립과 그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비록 기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전자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용에는 한계가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대리인과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들 국가의 법률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1) "agent" 용어를 해석하는데 있어 대표적으로 지원림(2001)은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웅길(1998), 우광명(2005), 오병철(2009) 등은 "대리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electronic agent"의 개념은 법인격을 갖느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리법상에서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므로 필자 또한 "대리인"으로 해석한다.

2) 봇은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이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인터넷을 위한 로봇(robot)과 같다. 즉 이는 그의 주인이 설정한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국내에서 전자대리인에 대한 연구는 법리적 측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는 계약 성립에 있어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법적문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아직 전자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고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자대리인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전자대리인의 의의와 법적 지위

1. 전자대리인의 개념과 성격

전자대리인은 인간인 이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전자대리인은 자동화된 대리인(autonomous agents)³⁾, “지능형 대리인(intelligent agents)”, 또는 “지능형 봇(intelligent bo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자대리인에 대한 개념은 인공지능기술개발이 시작된 미국에서 확립되었다. 초창기 전자대리인은 그들의 사용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초창기 전자대리인의 제1세대를 포함한 전통적인 검색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³⁾. 첫 번째는 웹상에서 정보를 모으는 검색엔진이다. 이는 모은 정보를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웹사이트에 링크한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룹은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협정을 체결한 웹사이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디렉토리 와 포털을 말한다. 마지막 그룹은 티켓 판매나 신문기사 수집 등 매우 특화된 주제를 다루는 특화된 검색엔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대리인을 통해 인간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 하는 등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전자대리인과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제2세대 전자대리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작동

3) A. Cruquenaire, “Electronic Agents as Search Engines: Copyright Related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3, 2001, pp. 327-343.

할 수 있고 그들 행위나 내적 상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 한다⁴⁾. 다시 말해, 현재 전자대리인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다.

전자대리인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자대리인을 사람의 검토나 행위 없이 행위나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법전용어로 채택한 예가 아직은 없다⁶⁾.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일곱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⁷⁾. 첫째, 반응성(reactive)이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율성(autonomous)이다. 스스로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실행함을 의미한다. 셋째, 목적지향적(goal-oriented)이다. 목적에 따라 활동함을 의미한다. 넷째, 일시적 지속성(temporally continuous)을 갖는다. 즉 대리인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다섯째, 대화성(communicative)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붓과 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성(learning)을 갖는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성(mobile)이다. 하나의 장비로부터 다른 장비로 스스로를 전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대리인이 상기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요건을 많이 갖추수록 전자대리인의 특징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은 대리인의 정의에 있어 그 개념이 약하다⁸⁾. 강한 개념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이외에도 인지(knowledge), 신념(belief), 의도(intention), 의무(obligation), 이동성(mobility)⁹⁾, 진실성(veracity)¹⁰⁾, 자비심(benevolence)¹¹⁾, 그리고 합리성(rationality)¹²⁾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¹³⁾.

4) Emily M. Weizenboeck, "Electronic Ag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rac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3, 2001, pp. 204-234.

5) UETA §2(6).

6) 오병철,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예외의 편입", 『민사법학』, 제4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p. 140.

7) Franklin & Graesser, "Is it an Agent, or Just a Program? A Taxonomy for Autonomous Agents," Third International Workshop On Agent Theories, Architectures, and Language, 1996, p. 4(<http://www.msci.memphis.edu/franklin/AgentProg.html>).

8) Wooldridge & Jennings는 약하고 강한 의미의 대리인(weak and strong notion of agency)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Wooldridge & Jennings, "Intelligent agent: Theory and Practice," <http://www.elec.qmw.ac.uk/dai/pubs/KER95>).

9) 전자네트워크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0) 대리인이 거짓 정보를 통신하지 않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11) 대리인은 충돌되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 항상 목표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12) 대리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13) Aleksandra M. Jurewicz, "Contracts Concluded by Electronic Agents-Comparative Analysis of American and Polish Legal Systems, 2005, p. 6 (<http://law.bepress.com/expresso/eps/714>, 10, Feb, 2011).

2. 전자대리인의 법적 지위

1) 단지 도구로 보는 견해

전자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는 전자대리인을 단순히 당사자의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¹⁴⁾. 전자대리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의 의도가 컴퓨터 장치의 행위에 의해 구속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¹⁵⁾. 이에 따라 전자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항상 당사자를 구속한다. 왜냐하면 전자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했거나, 예측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관계없이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그 대리인의 당사자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 대리인과 당사자에 적용되는 책임관계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자나 사용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¹⁷⁾.

2) 대리법 상의 대리로 보는 견해

사람이 대리인 경우에 관련된 현행 대리법처럼, 이는 전자대리인을 대리법에 의해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에게 수권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컴퓨터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지시를 근거로 서로 대화할 능력이 주어지고 원래 프로그램화된 지시 이외 인간의 인지 없이 합의를 이행할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컴퓨터는 특정 당사자의 지시된 인간 대리인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인간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¹⁸⁾. 대리법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법적 행위는 대리인의 실질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전자대리인은 당사자가 명백히 동의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3자에게 명백히 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

14) 기술의 진보에 따라 컴퓨터가 수행하는 보조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면 전자적 의사표시이론이 유용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자적 대리인은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도구라는 위치일 뿐이다(한용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 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pp. 15-16).

15) Tom Allen & Robin Widdison, “Can Computers Make Contract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9, 1996, p. 32.

16) Emily M. Weitzenbock, Electronic Ag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r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2001, pp. 215-218.

17) Samir Chopra & Laurence White, “Artificial Agents and the Contracting Problem: a Solution Via an Agency 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 2009, p. 371.

18) Jean-Francois Lerouge, “The Use of Electronic Agents Questioned Under Contractual Law-Suggested Solutions on a European and American Level,”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vol.18. 1999, p. 433.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법을 적용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리법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은 점차적으로 전자대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간섭 없이 행위를 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 법인격으로 보는 견해

전자대리인을 법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으로 계약 능력을 갖춘 법적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대리인이 법인격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전자대리인은 도덕적 자격(*moral entitlement*), 사회적 능력(*social capacity*)과 법적 편리성이다. 우선 전자대리인은 자연인과 같이 법적 보호를 도덕적으로 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는 대신 인격으로서 컴퓨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회적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는 전자대리인이 그들 인간 사용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하는 당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편리성으로서,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자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을 법인격으로 보는데 문제는 전자대리인이 하드웨어인가 또는 소프트웨어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¹⁹⁾. 이 경우 전자대리인의 동의를 표현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데는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자장치와 관련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것을 대리인으로 인식 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등기 제도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에 대해서도 등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Karnow는 “Turing Registry”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제안했다²⁰⁾. 이 시스템은 전자대리인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전자대리인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시스템이다. 수수료의 기준은 전자대리인의 지능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 전자대리인이 더 지능적이고 자율성을 가질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

19) Weizenboeck, *ibid.*, p. 213.

20) Curtis E. A. Karnow, “Liability for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996, vol.11, pp. 193-194.

태의 수수료 지불방법은 결국 비용이 매우 비싼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²¹⁾. 현 전자대리인 발전 수준에서 이는 경제적이지 않다.

전자대리인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대리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부여되는 경우 자율성을 가진 전자대리인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현 상황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²²⁾.

Ⅲ. 전자대리인 관련 법규

1. 전자대리인에 관한 국제법

1)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 전자대리인과 관련한 조항은 제1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제12조(당사자에 의한 데이터메시지의 승인), 제13조(데이터메시지의 귀속) 등이다.

즉 제11조에 의해,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에 이용된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효력 및 강제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메시지의 형태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기타 진술의 법률효과, 효력 또는 강제집행 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제12조). 나아가, 본법에서는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메시지는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한 자에게 귀속된다(제13조). 따라서 이는 전통적 대리인과 정보시스템의 작동 모두를 작성자로 본다²³⁾. 그러나 본법은 모델법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²⁴⁾.

2) CUECIC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UECIC)은 전자통신이 국제계약에 관

21) Jurewicz, *ibid.* p.14.

22) Weizenboeck, *ibid.* pp. 213-214.

23) 우광명, “전자대리인에 의한 계약성립의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제3호, 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7, p. 340

24)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37조 P52(“the matter of specifying exclusions should be left to enacting States...”).

련해서 이용되는 경우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UN협약이다. 본 협약에서 통신 또는 계약은 전자통신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제8조),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계약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해 이행된 행위 또는 계약에 대해 자연인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본법 제12조는 전자대리인 또는 봇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맞선다²⁵⁾. 이는 두 봇끼리 국제적 주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계약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봇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UN협약에 따라 “인간간의 계약이 결여된(devoid)” 상태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한 것이다²⁷⁾.

UN협약에서는 데이터메시지의 귀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서에서 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²⁸⁾. 즉 i) 프로그램화된 컴퓨터를 대신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은 궁극적으로 기계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를 책임진다; ii) 직접적인 인간의 간섭 없이 메시지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전자통신은 그 메시지 시스템 또는 컴퓨터를 대신한 법인으로 ‘기원(originating)’한 것으로 본다; iii)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는 협약이외의 규칙에 의해 다룬다. 즉 UN협약은 계약문제에 대해 대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는 전자통신의 이용의 필수적인 결과인 인간의 오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이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으로 교환되는 전자통신 상에서 입력에 오류를 범한 경우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이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는 그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전자통신 중에서 입력 실수한 부분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제14조 제1항)²⁹⁾. 따라서 오류가 선의로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외 계약체결상의 다른 오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의 범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³⁰⁾.

25) CUECIC Explanatory Note, p. 15.

26) *ibid.*

27) *ibid.*

28) *ibid.*, p. 70.

29) 즉, i)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실수를 인식한 직후 다른 당사자에게 그 실수를 통지하고 전자통신 상에 오류를 범했음을 표시하고, ii)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나 가치(material benefit or value)도 이용하거나 수취하지 않아야 한다.

30) CUECIC Explanatory Note, p. 235.

3) European Union: 전자상거래 지침서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전자계약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9조는 “회원국들은 계약이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특히 계약체결과정에 적용하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의 사용을 위한 장애를 만들거나 이러한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대 대해 법적 효력을 박탈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지침의 제안서 요약문(Executive Summary)에서 “회원국은 ... 지능형 전자대리인(intelligent electronic agent)과 같은 전자적 시스템 사용을 막지 않을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³¹⁾.

제9조의 의의에 대해 이는 계약 전후 관계를 포함해서 계약의 전 과정의 모든 필요한 단계와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회원국들은 전자계약 사용을 금지하는 다음 형태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³²⁾. 즉 i) 전자대리인과 같은 전자적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ii) 종이계약의 사용을 선호하는 관행에서 야기되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약화하거나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규정; iii) 계약이 종이문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성, 원본성, 또는 계약이 프린트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을 위해 이용되는 매체를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 iv) 계약이 자연인에 의해 협상되거나 체결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협상 또는 체결되거나 목격자가 있어야함을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전자계약을 쓸모없게 하는 요건 등이다³³⁾.

2. 주요 국가의 전자대리인 관련 법규

1) 미국

(1) UETA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은 전자기록, 서명 그리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UETA는 제한적이거나 전자대리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³⁴⁾. 즉 UETA는 “전자대리인의 행위나 그 결과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한 검토

31) Annex 1 to the Proposal for an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COM(1998) 586 final; 우광명, p. 345 재인용.

32) Youseph Farah, “Electronic Contracts and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Under the E-commerce,” *Journal of Internet Law*, vol.8, 2009, p. 10.

33) L. Moerel, “The Country-Of-Origin Principle in the E-Commerce Directive: the Expected “One Stop Shop”,”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Law Review*, vol.54, 2001, p. 98.

34) UETA §2(6).

없이”, 계약체결을 위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³⁵⁾. 제9조에서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은 그것을 행한 자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대리인의 오류는 운영자나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공 한다³⁶⁾. 그러나 조항의 정확한 범위와 오류가 사용자의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³⁷⁾.

(2) UCITA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은 컴퓨터정보 거래를 위한 모든 일련의 상사법에 대한 규칙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법은 통일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에서와 동일하게 전자대리인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에는 다른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 제 107조는 “비록 대리인의 작동이나 그 결과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경우에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인증, 이행, 또는 계약합의를 위해 선택한 전자대리인을 사용하는 자는 전자대리인의 작동에 의해 구속 된다”.

이러한 개념은 대리법에서의 법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³⁸⁾. 즉 전자대리인은 그것의 의도된 목적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관련목적(relevant purpose)”을 위해 사용되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석에서는 관련목적에 대해서 “인증, 실행, 또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for making an authentication, performance, or agreement)” 전자대리인을 “선택(selected)”한다는 원칙임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3) E-SIGN Act

2000년에 미국 의회는 국내외 상거래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Act)을 통과했다. UETA와 UCITA와 같이, E-Sign Act 또한 전자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E-Sign Act에서는 계약은 “전자대리인이 구속력 있는 당사자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한 계약이 하나 이상의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포함한 체결, 생성, 또는 인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결국 E-Sign Act는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사용자에게 ‘합

35) id §14(1).

36) Samir Chopra and Laurence White, “Artificial Agents and the Contracting Problem: A Solution Via an Agency,”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 2009, p. 387.

37) UETA §7 cmt.3.

38) UCITA §107 cmt.5.

법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속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캐나다

캐나다의 통일전자상거래법(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UECA)은 1999년 캐나다 통일법회의(Uniform Electronic Conference)가 채택한 법이다. 전자대리인과 관련해서 동법 제21조에서 계약은 전자대리인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전자대리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규정은 자연인이 그 자신을 위한 행동이거나 법인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⁴⁰⁾.

또한 동법은 전자대리인과 거래할 때 중요한 오류(material errors)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의하여 발생한 오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동법 제22조).

3) 호주

호주에서 관련법은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ETA)이다. 동법 제8조 1항에서 전자거래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전자대리인과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1항에서 “전자통신의 발신인(purported originator)과 수신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전자통신의 발신인은 그 통신이 발신인에 의하거나 발신인의 권한 내에서 송신된 경우에만 그 통신에 의해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대리인은 발신자의 권한 내에서 통신을 송부할 수 있다는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⁴¹⁾. 호주법은 대리법(agency law)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전자대리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없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문서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9) 15 U.S.C. §7001(h).

40) 우광명, 앞의 논문, p. 344

41) Chopra and White, *ibid*, p. 389.

3. 종합적 검토

전자대리인에 관련한 법규를 살펴본 결과 전자적 대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의사표시의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를 대신해서 운영되는 전자대리인의 법인(자연인을 포함한)이다⁴²⁾.

둘째, 전자대리인이 의도된 목적 내에서 운영되는 한 관련 목적을 위해 선택한 전자대리인을 이용하는 자이다⁴³⁾.

셋째, 전자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보내거나 전송된 의사표시에 권한을 가진 자이다⁴⁴⁾.

그러나 이외 다수의 법규에서는 의사표시의 귀속에 대해 실정법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결정하는 일반법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E-SIGN Act는 데이터메시지가 송신자에게 “법적으로 귀속(legally attributable)”되느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⁴⁵⁾. 또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서에서는 전자메시지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작성자에 의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인에 의해 구체적인 의사가 결정되고 표시의 입력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전자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귀속주체를 명확히 한정하기는 어렵다⁴⁶⁾.

4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 제(2항)의 (a); CUECIC 제10조.

43) UCITA § 107 cmt.5.

44) ETA § 15(1).

45) 15 U.S.C. § 7001(h).

46) 오병철, 앞의 논문, p. 147.

IV.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

1) 계약의 유효성 문제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므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즉 이는 모든 계약이 성립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특히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 객관적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⁴⁷⁾.

이때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내적인 의사의 일치인가 또는 외적인 표시의 일치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식과정까지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로 표시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⁴⁸⁾. 따라서 전자대리인을 통한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요건인 청약과 승낙을 구성하여 유효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영미법에 있어서 계약은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의도 즉 상호합의(mutual assent)와 약인(consideration)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의도의 일치(meeting of minds)”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합의에 대한 객관적 이론(objective theory)에 따른다. 즉 일방 당사자의 내적인 의사는 계약 체결에 필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객관적 이론은 전자대리인이 계약체결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과 전자장치의 사용으로부터 계약적 의도를 추론하게 한다⁴⁹⁾.

미국의 UCITA에서는 “manifestation of assent”를 규정하고 있다. 즉 112조 (b)에서 전자대리인은 검토 후 전자대리인을 사용하는 자를 대신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47)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관 2003.4.11. 2001다 53059).

48) 권순환, 「민법개요Ⅱ-채권총론·각론」, 제4판, 도서출판fides, 2009, p. 732.

49) Patricia Brumfield Fry, “Introduction to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Principles, Policies and Provisions, *Idaho Law Review*. vol.37, 2001, p. 241.

전자대리인이 사용자의 동의를 표시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⁵⁰⁾.

우리나라는 전자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사표시를 구분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통적 의사표시와 구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부정하고 전자적 의사표시는 결국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⁵¹⁾. 그러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봇의 등장은 가속화 될 것이고 이때 어디까지를 인간의 의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모호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전자대리인에 의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법상에서 대화자간 방법에서는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격지자간 거래에서는 승낙은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에 의한 승낙을 대화자간 방법으로 볼 것인가 또는 격지자간 방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전자대리인 의사의 귀속 문제

전자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컴퓨터가 창조적인 자기결정을 행할 수 없고, 인간의 의사의 범주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논리적 조작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장치에 의한 표시는 인간의 의사에 환언된다고 본다⁵²⁾. 이는 결국 전자대리인은 컴퓨터 장치 등을 통한 인간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때 전자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는 모두 인간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통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모두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베이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장치가 인간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사람이 개입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사표시에서는 표의자 한사람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전 과정이 진행되지만, 전자적 의사표시는 그렇지 못하다면 전자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누구의 의사표시가 되는지가 불분명하다⁵³⁾.

50) Ian R. Kerr, "Spirits in the Material World: Intelligent Agents as Intermediaries in Electronic Commerce,," *Dalhousie Law Journal*, vol.22, 1999, p. 231.

51)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권 제3호, 1998, p. 24

52) 위의논문, p. 50.

53) 오병철, 앞의논문, p. 138.

또한 대리인의 사용자가 대리인의 운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프로그램화된 대리인이 운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경우 데이터메시지의 귀속은 옳지 않다. CUECIC 제14조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 운영자의 책임부분에 대해 충분한 규정이 아니다.

이에 대해 UCITA의 경우 전자대리인을 선택한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이베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그 자체보다는 전자대리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됨이 명확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인은 “의도된 목적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한정된다.

2.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법규의 제정과 보완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우리나라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규율보다는 대부분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전자거래에 관련한 조항은 제2조와 제2장의 8개 조문에 불과하다⁵⁴⁾.

한편 우리나라 거래관계를 규정한 기본법이 민법 개정을 위해 2009년 2월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민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그중 전자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민법전에 편입 시킬 것인가에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⁵⁾.

이에 따라 전자거래 관련 어떤 규정이 민법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의사표시와 성립과 효력에 대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대화자간으로 볼 것인가 또는 격지자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독일민법 제147조 1항 2문에서 다른 기술적 설비를 통하여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von Person zu Person) 행하여진” 경우에만 대화자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전자거래에서 의사표시를 일률적으로 대화자간 또는 격지자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자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 요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함을 주장 한다⁵⁶⁾.

54) 오병철,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8권 2호, 2002, pp. 197-198.

55) 오병철, 위의논문, p. 118.

56) 오병철, 각주4 논문, p. 149.

(2) 전자대리인 의사의 귀속-대리법적 접근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대리인과의 계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단순한 도구로 보는 방법, 법인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대리제도를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논란이 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사람에게 귀속됨은 자명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느냐와 또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호주법에서는 관련 당사자가 관련 의사표시를 송부했느냐, 또는 의사표시가 관련 당사자의 권한으로 작성되었느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공식은 대리법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리법에서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때 대리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되므로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본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 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자대리인에게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본질과는 별도로 이러한 경우 제391조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본다.

전자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대리법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자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이를 수여함으로써 발생한다. 대리권은 본인의 계약상의 책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계약체결이 대리인의 명백히 수권된 대리권에 의해 체결된 경우, 본인은 계약에 대하여 인지가 없더라도 그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고, 계약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본인은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리법 접근에 따라, 전자대리인의 대리권을 결정하기가 쉬어진다. 예를 들어, 경매 웹사이트의 경우, 대리인은 사용자의 최고입찰가까지 입찰함으로써 대리권을 부여 받는 것이다. 즉 최고입찰가가 전자대리인의 계약적 대리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2) 실무상 제안방안

계약에서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전자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에 문제를 야기한다. 즉 계약은 두 당사자가 계약에 관여하지만 현재 전자대리인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을 통한 거래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많은 경우에 전자대리인과 체결하는 계약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두 당사자가

합의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작용의 규칙과 규약을 미리 규정하는 경우, 전자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한 어려움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일반적 조건(terms and conditions)의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⁵⁷⁾. 특정 계약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에는 계약체결시기, 또는 분쟁발생시 준거법이나 법정지 선택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로 하여금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될 것임을 수락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다. 예를 들어, eBay.com bidding agent를 이용할 경우, 그 경매가 최고구매인과 매도인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사용자에게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 설명이 요구되는 계약 생성을 막음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조건도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즉시 매도인을 위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인간이 개입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매도인의 전자대리인은 여전히 요구된 확인 이메일을 전송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 있어 인간간이 아닌 기계·장치·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전자대리인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사용자를 위해서 특정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다양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일정에 대한 확인만으로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거나 사용자의 식습관 패턴을 분석하여 식료품을 주문하는 등의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대리인 사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또는 일부

57) Tom Allen et al., "Can Computers Make Contracts?" *Harvard Journal of Law*, vol.9, 1996, pp.25-26; Anthony Bellia Jr., "Contracting with Electronic Agents," *Emory Law Journal*, vol.50, 2001, p. 1063; Samir Chopra & Laurence White, *ibid*, p. 366.

국가에서는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자대리인 용어를 언급하느냐에 관계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 성립의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비록 계약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자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대해서 이들 법규의 입장이 다양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기존 법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수단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요컨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전자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 효력의 문제와 귀속의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당장 전자대리인을 법전용어로 채택하느냐를 논할 수는 없지만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보다는 민법에서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물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당장 명확화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며 본 논문의 한계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순환, 「민법개요Ⅱ-채권총론·각론」, 제4판, 도서출판fides, 2009.
- 오병철,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8권 2호, 2002.
- _____,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에서의 편입”, 「민사법학」, 제4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 우광명,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성립의 법적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제3호, 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7.
- 지용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권 제3호, 1998.
-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 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 Allen Tom & Robin Widdison, "Can Computers Make Contract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9, 1996.
- Chopra Samir & Laurence White, "Artificial Agents and the Contracting Problem: a Solution via an Agency 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 Policy*, 2009.
- Cross, S.R., "Agency, Contract and Intelligent Software Agent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17 no.2, 2003.
- Cruquenaire, A., "Electronic Agents as Search Engines: Copyright Related Aspects," *Internatio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3, 2001.
- Farah, Youseph, "Electronic Contracts and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Under the E-commerce," *Journal of Internet Law*, vol.12, 2009.
- Fry, Patricia Brumfield, "Introduction to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Principles, Policies and Provisions," *Idaho Law Review*, vol.35, 2001.
- Karnow, Curtis E. A., "Liability for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996
- Kerr, Ian R., "Spirits in the Material World: Intelligent Agents as Intermediaries in Electronic Commerce," *Dalhousie Law Journal*, vol.22 1999.
- Gonzalo, S., "A Business Outlook Regarding Electronic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3, 2001.
- Lerouge, Jean-Francois, "The Use of Electronic Agents Questioned Under Contractual Law-Suggested Solutions on a European and American Level,"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vol.18, 1999.
- Middlebrook, Stephen T. & John Muller, "Thoughts on Bots: the Emerging Law of Electronic Agents," *Business Lawyer*, vol.56, 2000.
- Moerel, L., "The Country-Of-Origin Principle in the E-Commerce Directive: the Expected "one Stop","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Law Review*, vol.54, 2001.
- Weizenboeck, Emily M., "Electronic Ag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rac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3, 2001.

ABSTRACT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Kwang-Myung Woo* · Hyun-Sook Cho**

Computer technology has enhanced a new transaction between device or software not just between humans. It offers users agent-like functionality and becomes increasingly common. It's roles diverse from gathering informations to automated trading.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y challenges to traditional legal systems and makes issues in adjusting the legal systems. Contract with electronic agents makes some issues such as whether the contract is enforceable or what principle's responsibility about the operation of electronic agents is.

This paper analysis these issues and provides some solutions. First of all, we should make a legal act or revise previous laws. It is better that new civil law establishe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approach the law of agency for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issue. Secondly, in practice, website such as shopping mall should provide the terms of conditions to bind a contract.

Key words; electronic agent, intelligent agent, electronic contract

*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Wonkwang University